

## 왜 주민자치회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가?

### 1. 8년째 표준 조례로 시범 실시만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해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조례로만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한계가 명확함.

### 2. 선진 미래 주민자치제도 도입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6개국의 선진 주민자치제도 연구 등 3년간에 걸친 300여 학자들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현장에 맞도록 새롭게 설계한 주민자치회법(안)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운영, 주민권한의 강화 등을 반영하였다.

### 3. 주민자치는 누구의 간섭없이 주민 스스로 해야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간섭 없이 지원만 해주고 모든 권한은 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이번 주민자치회법(안)에는 읍·면·동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지원, 사업추진의 독립성을 명문화하였다.

### 4.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합법적인 예산 확보권 규정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주민자치회는 진정한 주민 대표로서의 자격과 합법적인 예산확보 권한이 없었으나,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세사용, 기부금 수령, 회비수납 등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화하였다.

### 5. 주민자치회 탄력적 운영 규정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조례 운영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 운영규약을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적용되는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